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일시** 2024. 6. 4.(화) 10:00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Space

주 최 | **PIPLA** 개인정보보호법학회

**KOVA**  
(사)벤처기업협회

**6** **STARTUP**  
**ALLIANCE**

**KOREA**  
**STARTUP**  
**FORUM**

**KGAMES**  
한국게임산업협회

**KOWA** 한국여성벤처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Women's Association

**KOLS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Kinternet**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



| 시 간                  | 내 용           |                                                                                                                                                                       |
|----------------------|---------------|-----------------------------------------------------------------------------------------------------------------------------------------------------------------------|
| 10:00~10:05<br>(5분)  | 인사 및 소개, 기념촬영 |                                                                                                                                                                       |
| 10:05~10:15<br>(10분) | 개회사 및 환영사     |                                                                                                                                                                       |
| 10:15~10:35<br>(20분) | 발제 1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br>»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10:35~10:55<br>(20분) | 발제 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br>»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
| 10:55~11:00<br>(5분)  | 장내 정리         |                                                                                                                                                                       |
| 11:00~12:00<br>(60분) | 종합<br>토론      | » <좌장>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br>» 황지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br>»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br>»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br>» 사창우 팀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br>»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
| 12:00~12:05<br>(5분)  | 폐회사           |                                                                                                                                                                       |

※ 구성 및 시간 변동 가능



# Contents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



- **개회사** 김현경 회장(개인정보보호법학회) ..... 1
- **환영사**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3
- **환영사** 한상우 의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5

## 발제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7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 17

## 종합토론

〈좌장〉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황지은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29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31
-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33
- 사창우 팀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35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 37



## 개 회 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차 개정안(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금융영역에 제한적으로 규정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민간영역의 포괄적인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2023년 3. 14.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3. 9. 15.부터 시행되었으나, 마이데이터 시행의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시행이 늦춰진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본질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혹은 강화’로 본다면, 현재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 즉 대상정보의 범위, 사업의 진입규제,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각종 의무(컴플라이언스 및 보안수준 등)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관리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의 본질을 ‘데이터 신산업 창출’에 둔다면, 마이데이터에 대한 진입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핵심인 ‘규제법’입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에서 구성, 운영되는 한 혁신이 본질이 되기보다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등 매우 원칙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정보주체의 권리실현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균형점을 답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창립 이후 개인정보 관련 이론적·원론적 담론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개선 방향 등 실무적 논의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방위적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저희 학회와 마이데이터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바람직한 법 시행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김 현 경**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참여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 이전에, 여러 가지 우려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 등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 AI와 데이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전송의무자로 포함된 우리나라 오픈마켓 기업들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에게 더 부담을 지게 하는 이번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송의무자의 범위에 스타트업, 벤처 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 도전해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경우 어렵게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전에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 세계가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 IT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한 소중한 의견들이 우리 사회의 데이터 경제와 AI 기술 발전,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4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성 호**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한상우 입니다. 오늘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신동 교수님께서 GDPR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허용 범위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린의 전용준 변호사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도 여러 전문가와 현장 업계 관계자께서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가공 속에서 일어날 혁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이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이 토론회를 통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한 상 우**

발제 1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

정신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

정신동(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Contents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3. 결론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EU GDPR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은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어느 한 컨트롤러로부터 다른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
  -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 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하고 또한 **EU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며 컨트롤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맥락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됨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GDPR 제20조의 직접적인 전신은 2012년 EU 위원회 초안(당시 제 18조 GDPR(COM))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규정안은 유럽 의회에서 삭제되었다가 이사회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음.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경쟁법 및 소비자법의 교집합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정보 이동성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으로도 논거 지워지고 있음: 예컨대 채권관계 종료 후 개인정보 반환에 관한 채권법상 청구권(Albrecht/Jotzo DatenschutzR 88)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chaffland/Wiltfang/Schaffland/Holthaus Überblick zur DS-GVO (Ziff. 190), Rn. 28 Abs. 2)
- 향후 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포괄적 도입이 된다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개념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이 상당하여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 EU GDPR 제20조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

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주체는 정보관리자에게 제공했던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던 정보 관리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정보 주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가 한 정보 관리자에게서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로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2. In exercising his or her right to data portabilit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have the personal data transmitted directly from one controller to another, where technically feasible [ soweit dies technisch machbar ist. ] ).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라는 법적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GDPR 입법이유(Recital) 68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
  -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 관리자가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지해야 할 의무까지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 정보주체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 특히 사업자가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술적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BeckOK DatenschutzR/von Lewinski DS-GVO Art. 20 Rn. 88; Plath/Kamlah Rn. 10).
- 또한 사업자가 자신만의 특별 형식을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분야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이 없는 경우라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부인 됨
- 나아가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 경제적 기대가능성

-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은 경제적으로 기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이 부인된다는 GDPR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음: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제안되었지만 GDPR의 최종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 형평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의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로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음(예컨대 BeckOK DatenschutzR/von Lewinski DS-GVO Art. 20 Rn. 91 vs. Spindler/Schuster/Spindler/Dalby DS-GVO Art. 20 Rn. 11)



## 1.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EU GDPR

### • 영업비밀

-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집단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제2조 제1호 가목 지침(EU) 2016/943)로서,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고(제2조 제1호 나목 지침(EU) 2016/943) 해당 정보의 적법한 보유자가 취한 보안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제2조 제1호 다목 지침(EU) 정보를 말함.
- 좁은 의미에서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영업 비밀이 아니지만, **이전할 데이터의 구조, 특히 메타데이터**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영업비밀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Jasper DuD 2012, 571, 573).
- 예를 들어 **상호작용 데이터**도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제공' 한 정보로 넓게 이해하게 되면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외부에서 추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입법자 의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한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2.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실현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전송항목 표준안마련과 2025년 제도 시행을 위해 유통, 의료, 통신, 에너지 등 4개 분야의 선도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전송 항목을 요구하고 있음
-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서비스 등)이 어느 정도 인지 명확해 할 필요가 있어 보임(마이데이터의 유지 비용만 지출하고, 데이터를 제공만 해야 하는 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은 소규모인 경우 우선 규제 대상이 된 기업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 2023년 총 원가가 1279억원이며, 그중 정산대상인 정기적 전송 비율이 22.05%로 282억원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불하였고, 금융마이데이터에 참여한 수백 곳의 기업은 2023년에 997억의 비용 손실이 있었다고 함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실현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전송항목 표준안 마련과 2025년 제도 시행을 위해 유통, 의료, 통신, 에너지 등 4개 분야의 선도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전송 항목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마이데이터에서와 달리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는 어떤 신사업이 발굴 가능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
  -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충분한 논의 끝에 추진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타당한 지적.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일응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가능하나, EU에서의 논의처럼 처음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또는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가 전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나아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전송 대상이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 세트로서 기업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를 무한정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향후 데이터 구축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타사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가능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소위 '민감정보 유출 문제'>

-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송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주문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전송할 경우, 특히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는 (구매이력을 숨기고 싶은)상품을 구매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억 내지 인지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정보주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



## 2.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요구권

### <소위 ‘경제적 합리성’ 고려의 문제>

- 구체적인 API 송수신 방법(중계기관, 인증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부담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구체적인 정보 송수신 방법, 서비스 참가 기관 별 비용정산 방식 등의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감사합니다.

발제 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전응준(법무법인 린 변호사)

2024. 06. 04.

법무법인 린

## 목차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비교법적 분석
3. 검토

## 발표자 소개



### 전응준 변호사

T. 02-3477-8686

F. 02-3477-8687

E. [ejjeon@law-lin.com](mailto:ejjeon@law-lin.com)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현 컴퓨터공학과 및 통계학과)
- 사법연수원 제33기 (43회)
- 전) 유미 법무법인/특허법인 변호사,변리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위원장
- 현)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 전)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2

## PART 1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麟 법무법인 린

### □ 정보전송자의 유형 및 전송정보 기준(영 제42조의2, 제42조의4)

- 본인 전송(본인 다운로드)과 제3자 전송요구로 구분
-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정보전송자
  - 정보주체 수가 10만명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 법인, 단체 등
-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전송정보
  - 법에 따라 전송 가능한 정보 중 제3자 권리 침해 정보 등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제3자 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 (의료)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 고시 // 진단내역 등 보건의료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 (통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고시하는 자 // 가입정보 등 고시하는 정보
  - (유통)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면서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고시하는 자 // 주문정보 등 고시하는 정보
  - (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고시하는 자//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

3

## PART 1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麟 법무법인 린

## □ 정보수신자의 종류

- 제3자 전송의 경우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가능
- 일반수신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일정한 시설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자. 맞춤형 서비스 안내, 연구, 교육,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없음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유형(제42조의8)

- 중계 전문기관,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지정
- 중계 전문기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원칙적으로 일반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예외 있음)
- 일반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특수 전문기관: 보건의료정보를 관리, 분석

4

## PART 1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麟 법무법인 린

## □ 전송 방법(제42조의5, 6)

- 전송 요구 방법
  - 정보주체는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대상 정보, 수신자 등을 특정하여 전송 요구
  -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전송요구를 할 수도 있음
  -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기적 전송 요구
- 중계 전문기관을 통한 전송
  - 정보전송자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 → 전송과정에서 정보 집중
  - 전송방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은 API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중계기관에 의한 전송을 규정
  - 정보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 정보를 분리 보관 → 정보주체의 파기 요구에 대응
- 정보 전송 수수료 산정(제47조 제5항)
  -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5

PART 2

비교법적 분석

麟 법무법인 린

□ EU GDPR의 data portability 취지와 현실

- 본인정보의 통제권 강화 + 서비스 시장의 lock-in 효과 개선 목적
- 데이터 열람권에 비해 감독당국 및 법원의 사례가 거의 없음  
(<https://iapp.org/news/a/data-portability-in-the-eu-an-obscure-data-subject-right>)

□ 전송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

- 한국법 및 GDPR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내지 계약에 의해 처리(제공)되는 정보를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GDPR에서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데이터’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음. WP29는 ‘data provided by data subject’의 범위를 넓게 보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된 데이터(주소, 이름, 나이), 관측된 데이터(observed data)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임
  - ❖ 관측된 데이터: 서비스나 기기에 의해 수집되어 정보주체가 제공한 데이터. 검색기록, 교통기록, 위치정보, wearable device에 의해 추적된 심장박동수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추론 내지 파생정보(inferred and derived data)는 데이터 이동권에서 제외

6

PART 2

비교법적 분석

麟 법무법인 린

□ 네덜란드 법원의 Ola 택시 판결(Rb. Amsterdam – C/13/689705/HA RK 20-258)

- 택시 앱 드라이버가 Ola 회사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API 내지 CSV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기를 요구하였으나 Ola는 개인정보 일부만 해당 파일로 제공
- 법원은 GDPR 제20조의 ‘structured, commonly used and machine-readable format’표현이 자동적으로 CSV 파일이나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 또한 법원은 Ola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여기서 ‘타인’에는 컨트롤러인 Ola 자신도 포함된다고 판시 → 즉 전송요구정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 IP 등이 포함된 경우 전송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함

□ EU 집행위의 GDPR에 대한 첫번째 평가(2020. 6.)

-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욕구는 현재 제한적이므로, 데이터 이동성 제도의 잠재력 실현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
- 한국법은 정보수신자가 데이터 분석을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GDPR에 비해 데이터 이동성의 파괴력이 큼

7

## PART 3

## 검토

麟 법무법인 린

## □ 전송정보

- GDPR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 등이 전송요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법률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Airbnb의 평점은 원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의 중간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전송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 전송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없음. GDPR은 “structured, commonly used, machine readable format”이라고 규정한 반면 한국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전송 파일 형식에 대해 규정할 필요 있음

8

## PART 3

## 검토

麟 법무법인 린

## □ 정보전송자

- 정보전송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필요 있음. 정보전송자는 정보 전송 전 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정보 전송 전에는 수신자에게 제대로 전송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정보 전송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내지 정보수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정보주체의 매우 민감한 정보가 전송되거나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에 대해 정보주체와 정보전송자 간의 이해가 달라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 가입자 수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는 정보전송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정보전송자를 배려할 필요 있음

9

PART 3

검토

법무법인 린

□ 정보수신자(전문기관)

-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특히 일반 전문기관이 전송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정보주체에게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신용정보법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태를 설정한 것과 입법적으로 유사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제1항 각 호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 분석” 정도로 규정할 뿐이므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법문상 전문기관의 업무에 속하는지 의문이 있음
- 신용정보법은 처음부터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과 이에 대응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규정하였으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법문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기관 정도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 GDPR상의 정보수신자 개념과도 상이함

10

PART 3

검토

법무법인 린

□ 정보의 집중

- 전송과정에서 중계 전문기관으로 정보 집중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제42조의8 제3항), 단서 조항에서 비영리단체인 중계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 전문기관의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집중 가능성이 잔존함
- 수신결과에서 일반 전문기관으로 정보 집중됨
  - 일반 전문기관은 이종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보호에 실패하는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
  - 수사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국민 감시 가능성이 높아짐
- GDPR은 정보수신자에 의한 정보 집중(분석) 가능성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한국법 고유의 문제라고 할 것임

11

## PART 3

## 검토

법무법인 린

## □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용

- 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통해 외국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국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밝힘
-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외국사업자에게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보유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한국사업자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반대로 한국사업자가 보유하는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외국사업자에게 이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령과 같은 데이터 이동성 제도가 외국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현재 마련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법 제28조의8)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요구됨

12

## PART 3

## 검토

법무법인 린

## □ 서비스 수수료, 데이터에 대한 보상

- 시행령 개정안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시 정보전송자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47조 제5항)
-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에도 정기적 전송에 대한 과금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비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도 과금 규정을 두어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본인 전송인 경우에는 과금의 필요성이 거의 없지만 제3자 전송인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일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3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린

종합토론

##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





## 토론 1



## 토론 2



## 토론 3



## 토론 4



## 토론 5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 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